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67

발의연월일: 2025. 3. 5.

발 의 자:주호영·김승수·고동진

최은석 · 김종양 · 김성원

박수민 • 김민전 • 신성범

장동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.

그런데 2018년 「은행법」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 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,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 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 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

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13제2항).

법률 제 호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13제2항 중 "자"를 "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"로, "알려야"를 "매 분기마다 알려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리인하요구권 고지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 ①	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	2		
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<u>자</u> 에게	<u>자 및 신</u>		
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	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		
할 수 있음을 <u>알려야</u> 한다.	<u> 공</u> 여를 받고 있는 자		
	<u>매</u> 분기마다 알		
	<u>려야</u>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